# 목 차

서론	3
제1장 중요성 결정 및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5
제2장 주요 항목 감사 체크리스트	6
제3장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	. 54
제4장 감사보고서 사례	. 62

## 서론

#### 1. 가이던스의 목적과 범위

#### 목적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가이던스'(이하 '이 가이던스')는 회계법 인(이하 '감사인')이 「보험업감독규정」제6-8조의 제2항에 따라 다음 항목(이하 '지급여력 및 건전 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을 감사할 때 도움이 되는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업감독규정」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 「보험업감독규정」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 「보험업감독규정」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 감사 수행 기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보험업법 제123조 제1항에 의한 재무건전성 기준(이하 '작성기준' 또는 '산출기준')에 따라 보험회사가 작성한다.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은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 이므로 감사인은 대한민 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다. 또한 산출기준은 '준수 재무보고체계'이므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서 준수체계 관련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감사인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일반 재무 보고 목적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입수한 감사증거를 이용할 수 있다.

#### 가이던스의 범위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시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 중 비보험 금융회사의 업권별 요구자본은 이 가이던스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2. 가이던스의 구성

이 가이던스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특유의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한 다음과 같은 실무적 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장 중요성 결정 및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제2장 주요 항목 감사 체크리스트
- 제3장 경영진진술서 사례
- 제4장 감사보고서 사례

#### 3. 가이던스 활용 시 유의사항

이 가이던스는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의 요구사항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기준은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의 요구사항이나 적용자료에 우선하거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의 요구사항이나 적용자료를 변경하지 않는다.

이 가이던스는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을 대신하지 않는다. 또한 이 가이던스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업무의 모든 측면을 다루는 포괄적인 지침이 아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 대상 회사의 특성과 개별 업무상황에 맞게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보험계리 전문인력을 감사인측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 서 620에 따라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 역량 및 객관성을 평가하고 감사인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가 감사목적상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을 커뮤니케이션하기로 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701에 근거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구성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감사대상 항목에서 유의적 경영진판단 분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제1장 중요성 결정 및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 중요성 결정

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 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준서 320에 따라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을 결정한다. 중요성 결정은 전문가적 판단 사항이며, 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정보 수요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정보이용자는 감독당국이므로 감사인은 중요성 결정 시 감독당국의 정보 수요와 감독 의사결정 기준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감사인은 감독당국의 주된 관심사가 지급여력기준금액이라고 판단한 경우 지급여력기준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전체 수준의 중요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평가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450에 따라 감사 중 식별된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왜곡표시가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성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식별된 왜곡표시를 수정할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법규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같이 정보이용자인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2장 주요 항목 감사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인이 (1)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하여 통제테스트 또는 실증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평가할 때 점검할 필요가 있는 주요 항목을 제시한다. 아래 각 항목은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아래 항목에 발생할 수 있는 왜곡표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아래 항목이 모두 매 감사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는 감사인이 회사와 회사의 환경에 대한 이해, 감사인의 위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 감사업무 상 황에 맞게 결정한다.

#### I. 총칙

#### 1. 지급여력비율 산출 원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대상	그룹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그룹의 범위는 <표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지급여력비율 산출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확하게 산출되었는가?	

#### 2.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그룹의 범위	<표1>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방법에 따라 비금융회사가 아닌 종속회사의 경우 계정별 합산, 관계회사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의 경우 투자지분을 계상하였는가? 비금융 종속회사의 경우 투자지분계상을 원칙으로 하였는가?	
세부 작성 방법	비금융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하였는가? 비금융회사를 제외한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K-IFRS를 준수했는 가?	
	비금융 종속회사 외 종속회사는 K-IFRS에 따라 계정별로 합산하고 내부거래를 제거했는가? 만약 적용하지 않은 경우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점검하였는가?	
	계정별 합산 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상 자산과 부채 평가기준에 따라 측정된 금액을 계상하였는가?	
	종속회사의 영업권과 시장성 없는 무형자산을 제외하였는가?	
	비금융 종속회사는 계정별로 연결하지 않고 투자주식 금액을 계상하였는가?	
	관계회사는 계정별로 연결하지 않고 투자주식 금액을 계상하였는가? 투자주식 가액은 시장가격으로 측정하였는가?	
	관계회사 투자주식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관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상 자산과 부채 평가기준에 따라 측정한 금액에 기반한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으로 계상하였는가?	
	관계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상 자산과 부채 평가기준에 따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영업권 및 시장성이 없는 무형자산을 차감한 후의 K-IFRS 재무상태표 상 순자산의 지분율 상응액을투자주식 가액으로 계상하였는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항은 K-IFRS에 의해 작성되었는가?	

# 표 자산 및 부채 평가

## 제1장 총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적용 범위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및 작성 범위에 대하여 회사의 자체 검증이 있었는가?	
	감사인에게 제시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외부감사를 받은 일반재무보고목적 재무제표에 기초한 것인가?	
평가 원칙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한 자산 및 부채가 존재하는가?	
	특수관계자 거래에 의한 자산 및 부채가 있는 경우, 그 평가금액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인가?	
공정가치의 정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공정가치가 적용되는 항목 및 각 항목별로 적용될 공정가치 방법론이 회계정책으로 마련되었는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각 항목별로 공정가치 서열체계(1~3)의 적용 방안에 대한 사전적 회계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특히, K-IFRS 공 시와 다른 항목(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한 공정가치 서열체계 적용 방법론이 별도로 마련되었는가?	
	공정가치 적용 중 2순위 3순위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유사 대상, 벤치마크 방법, 추정방법 등 대안적인 평가기법)이 회계정책으로 마련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며, 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것인가?	
중요성	중요성 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사전에 마련하고 문서화하였는가? 그리고,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책임 있는 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것인가?	
특별계정 구분 표시	변액보험, 퇴직연금(실적배당형)에 대한 구분 표시 여부는 적정한가?	
	IFRS 재무제표에서 특별계정구분 표시 항목이 적절하게 분류되었고, 전산 환경 및 데이터 구분, 분류된 결과에 대한 경영진의 검토 및 승인이 있었는가?	
정보성 계정의 표시	재무상태표의 하부 계정과목으로 요구자본 산출 및 지급여력 산출과 관련한 세부 계정 명세서가 유지되고, 이에 대한 회사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각 세부 명세의 합계가 계정과목 및 합산정보와 일치하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예: 잔존만기3개월이내예치금, 책임준비금에 포함된 수취채권(보험미수금,구상채권))	

# 제2장 자산 및 기타부채 평가

# 2-1. 일반원칙

# 2-2. 할인율 산출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무위험 할인율 적용	예치금, 대출채권, 금융부채 및 우발채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무위험 금리가 산출되는가?  - 원화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무위험수익율 사용  - 외화는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는 해외통화 최장 만기까지 무위험금리를 Smith Wilson 보간법으로 추정한수익율 곡선 사용  - 금융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 경우 원화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적용하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한 산출기군 및 과정을 문서화하여야 함	
객관적인 시장 수익 률 사용	위험스프레드를 해당 자산·부채의 시장수익률과 동일 만기의 국채수익률의 차이로 계산하였고, 적절한 시장데이 터를 사용하였는가?	
신용등급 매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IV.5-2.나."의 K-ICS신용등급 적용기준에 따라 매핑 되었는가?	
원화 거래상대방일 경우 (금투협 수익률 사용 가능)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보증 회사채 및 국고채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2-2. 나. (2) ②"에서 정의한 다음의 거래상대방별로 위험스프레드를 산출하였는가? - 산업은행: 산금채의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 중소기업은행: 중금채의 무보증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 시중은행(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제외): 은행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가기준수익률 -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과목	점검 항목	결과
	-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공모사채 중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해당하는 무보증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	
원화 거래상대방일 경우 (금투협 수익률 적용 못할 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마련한 적용기준 및 설정 근거 등의 문서화가 적정한가?	
외화 거래상대방일 경우	회사가 산출한 외화 기준 회사채 수익률 및 국채 수익률의 출처가 "블룸버그", "로이터" 등과 같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데이터로부터 도출된 것인가? 이때 원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관련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였는가?	
무등급 처리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은 "2-2. 나. (2) ④"에서 정의한 기준에 따라 산출되었는가? - 예치금: 금융기관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 일반대출 및 기타대출: 공모사채 중 BBB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은 A0등급의 무보증 회사채수익률) - 특수금융: 매입수익률(실행 당시 대출금리)을 기준으로 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매핑(Mapping)하여 사용 다만, 매입 이후 특수금융의 신용위험 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반영하였는지 확인	
회사채 수익률의 잔 존만기가 관찰되지 않을 경우	거래상대방의 잔존만기에 대응하는 회사채수익률을 관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채수익률을 적정한 방식으로 보외하였는가?	

# 2-3. 자산 평가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현금 및 예치금	감사기준일 현재 현금, 예치금 등에 대한 시재액이 실재하는가?	
	만기가 3개월 이상이면서 시장금리와 차이가 있는 예치금 등에 대하여 공정가치 평가가 적정한가?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는 3개월 이상 예치금 등의 공정가치는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에 의해 산출되었는가?	
	관련한 이자수익의 계산, 현금흐름표상의 증감내역과 연계되어 합리성이 있는가?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연금 등)에 포함된 현금 및 예치금이 적정하게 일반계정 재무제표에 표기되고 이 항목들이 구분되어 관리되었는가?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실재성이 있는가?	
	관련한 이자수익 계산, 처분손익이 증감내역과 연계되어 합리성이 있는가?	
	유가증권의 분류체계가 적정한가? (분류는 기중의 재분류를 포함)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한 분류체계 및 평가방법이 사전에 정해져서 회계정책이 문서화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금융자산에 포함된 파생상품 요소가 식별되어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있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적정한가?	
	간접투자증권은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평가되었는가?	
	자기주식이 자본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되었는가?	
	특별계정(변액 및 퇴직연금 등)에 포함된 유가증권이 적정하게 일반계정 재무제표에 표기되고 이 항목들이 구분 되어 관리되는가?	
대출채권	대출채권이 기업, 개인, 보험계약대출로 구분이 적정한가? 각 분류별로 사전에 공정가치 평가방법이 회계정책으로 수립되었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기업대출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채권평가사 및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가치가 있는 대출채권과 평가가치가 없는 대출채권으로 사전에 분석되고 정의가 되어 있는가? 채평사(또는 신평사) 평가가치가 없어서 신용스프레드 조정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평가방법에 사용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 할인율이 적절하게 산출되었고 이에 대해 회사는 검토 및 승인을 하였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개인대출은 현금흐름조정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 평가하는 경우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에 사용된 상환스케줄 및	
	부도 시 손실액 및 할인율이 적절하게 산출되고 이에 대해 회사는 검토 및 승인을 하였는가?	
부동산	공인감정평가업자 또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또는 KB부동산시	
	세 이용)으로 공정가치가 후속측정 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매년 재평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감정평가에 활용한 외부전문가 활용에 대한 내부통제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	
	투자수익률이 유의적으로 하락(2년 연속 하락 또는 전년 대비 5% 하락)한 경우를 파악하고 반영하였는가? 유의	
	적인 하락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감정평가를 수행하였는가?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 평가에 준한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매기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감정평가에 관한 선정, 절차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내부기준 및 통제장치가 마련되었고, 이에 대해 적	
	절하게 문서화가 되었으며, 이를 평가하였는가?	
이연법인세자산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상 장부금액의 차이가 적절히 계산되고, 이에 대한 이연법인세자	
(부채)	산 및 부채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검토가 있었는가?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판단을 K-IFRS에 따라 적절하게 하고 이에 대한 회사의 검토가 있었는가?	
무형자산	후속측정시 재평가모형으로 하는 무형자산과 그렇지 않은 자산(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장부금액으로 하는 자	
	산 또는 영업권과 같이 영(0)으로 처리하는 자산)에 대해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한 내역에 대한 회 사의 검토가 있었는가?	

# 2-4. 기타부채 평가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금융부채	사채와 차입금 공정가치평가에 사용된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 및 할인율이 적절하게 산출되고 이에 대해 회사	
	는 검토 및 승인을 하였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우발부채	우발부채에 대한 정의 및 인식기준과 K-IFRS 우발부채인식기준과의 차이에 대해 사전에 정의되고 이에 따른 산	
	출방법, 추정이 불가능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판단근거 및 사유에 대해 적절히 문서화되고, 이에 대해 회사는 내부적으로 검토 및 승인을 하였는가?	
계약자지분조정	계약자지분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지분증권, 채무증권 등)의 미실현손익을 대상으로 함  (2) 결산일 현재 동 자산 미실현손익을 금융감독원이 정한 배분 비율에 의해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구분 함  (3) 계약자 몫으로 구분된 자산 미실현손익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함	
그 밖의 부채	그 밖의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22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부채는 보험감독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되었는가? 다르다면 해당 내역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 제3장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부채평가

## 3-1. 일반원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평가대상	모든 보험계약이 포함되었으며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3항에 따른 투자계약으로 분류된 계약이 포함되었는 가?	
분류기준	보험부채가 현행추정부채, 위험마진으로 구분되었는가? 보험계약대출과 재보험자산이 별도의 자산으로 기재되었는가?	
예외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책임준비금은 보험감독회계기준 특별계정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으로 산출되었는 가?	

## 3-2. 현행추정부채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원칙	현행추정부채에 보험계약 의무 이행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는가? 이경우에 미래 현금흐름에 직접비 뿐만 아니라 간접비도 포함되었으며, 확률론적 시나리오의 적용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현재가치를 확률론적으로 산출하였는가?	
	원수보험을 대상으로 하며 보험미수금, 보험미지급금, 구상채권, 선수보험료 등의 연관된 항목이 포함되었는가? 보험료부채와 준비금부채로 구분되었는가?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현금흐름은 주계약과 특약을 구분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주계약을 기준으로 통합하였는가?	
	위험률 가정은 서로 다른 담보를 통합하여 산출하지 않았는가?	
	평가시점 현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 관련 금액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비보험사고 관련 금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만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는가?	
	현금흐름산출과 관련한 "계약의경계"는 IFRS17 및 보험업감독규정상 "계약의 경계"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단, 실 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3-2의 나.(3) 계약의 경계 ④에 따라 판단되어 처리되었는 가?	
	공동재보험의 계약의 경계 판단은 인수보험사와 출재보험사가 동일한가?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필요)	
보험료부채 (계리가정)	계리가정의 내부정보, 외부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방법론, 효과에 대한 검증, 변화의 추세, 합리적판단근거, 주기 적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의사결정 기준 체계 및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소재에 대한 내부통제, 문서화 이행 여부가 적정한가?	
	계리적가정이 평가대상 보험계약과 유사한 속성을 가진 보험계약의 최근 보험료 산출 시 사용된 가정과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가?	
	계리적가정이 변경되는 경우, 중대한 외부환경변화 여부, 변경에 대한 적절한 확신의 근거, 변경으로 인한 계량 적 영향평가와 이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인가? 또한, 전 과정에 대한 산출기준, 검증기준 및 검증결과에 대한 문서화는 적정한가?	
	사업비 가정은 보험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보험종목 별로 구분되며, 장기, 일반 보험과 구분하고 이에 대한 구분기준이 문서화되었는가? 또,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이때 보험계약 의무이행과 관련되지 않은 일회성 사업비를 제외하고, 보험회사가 집행한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가정이 산출된 것인지확인하였는가?	
	사업비 가정은 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미래의 관련 정책변화, 효율성,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특히, 사업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경우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사업비 가정은 판매채널 특성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 계약유지비용, 손해조사비용, 투자관리비용으로 적절하게 구분되었는가? 특히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 계약체결비용: 경과기간별로 구분산출, 미래에 집행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물가상승률 반영 (신계약	

과목	점검 항목	결과
	판매, 심사, 개시 업무부서의 인건비 등 관련된 비용은 사업비 특성 및 원가동인을 반영하여 계약체결비용으로 구분)	
	- 계약유지비용: 보유계약건수 또는 수입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출, 물가상승률 반영 - 손해조사비용: 보험사의 경험통계 활용	
	- 투자관리비용: 투자활동과 관련한 비용으로 부동산, 주식 운용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 등(상세 규정 참조)	
	투자관리 비용율 가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ul> <li>대상: 회계비용, 투자담당 직원의 급여, 투자거래 수수료 등 투자활동과 관련한 모든 비용</li> <li>제외: 부동산, 주식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제외</li> </ul>	
	(개별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관리비용은 당 자산에 직접 배부하고 공통 발생비용은 자산의 장부가 액 기준으로 배분)	
	-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단위별 투자관리 비용 =	
	투자관리비용율 X 해지시 지급액(보험계약대출 잔액 차감, 직전 결산기말 시점 기준, 경과기간감안) (*) 투자관리비용율: 보험료부채 현금흐름산출단위에서 정한 단위로 산출,	
	보험료부채 현금흐름 산출기간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될 때 까지 적용	
	해약률은 보험사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 구분하여 경제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매기간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는가? 해약률의 가정에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가? - 보험종목	
	- 계약자옵션종류 - 보험가입 연령	
	- 경과 기간(역선택 효과 포함)	
	- 보험료 납입상태, 납입방식, 납입주기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수준	
	- 해약환급금 규모	

과목	점검 항목	결과
	- 계약자배당예상	
	- 해지시 세금효과	
	- 판매채널	
	- 수당	
	- 계약상태(부활, 승환 여부 등)	
	- 보험계약의 이자율과 시장금리차이	
	위험률은 보험회사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여 미래의 관리정책을 반영하고 경험통계 기간	
	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매 기간 일관되게 적용하였는가? 다음의 사항이 합리적으	
	로 반영되었는가?	
	- 위험담보별 산출 (사망, 생존연금, 생존건강, 일반손해 등/보다 세분화 가능)	
	- 연령, 성별, 직업, 건강 요소 등	
	계약자행동 가정(해약률, 연금일시금전환율, 중도인출률 등의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통계에 기반하고,	
	금융시장 상황, 대고객정책을 반영하여 산출되었는가?	
	경영자행동 가정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사업관행을 변화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현재 사업	
	관행 및 사업전략과 일관되게 적용되었는가?	
	경영자행동 가정은 검증인의 독립적인 검증결과 적정한가? 경영자행동 가정들은 상호간에 일관성이 있는가? 다	
	음 사항의 합리성을 회사가 검증하고 문서화하였는가?	
	(대상: 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정책, 사업비정책, 갱신계약의 계약조건 조정, 공시이율 조정률	
	설정)	
	- 경영자행동 가정과 과거 실제 경영자 행동 비교	
	- 현재와 과거의 경영자 행동 가정 비교	
	- 경영자행동 가정 변경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변동	
보험료부채	보험료 부채의 미래 현금흐름에 다음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평가되었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옵션 및 보증평가)	- 옵션: 계약해지, 위험보장 증액 및 감액 등의 계약자 행동에 따른 옵션 - 보증: 최저보증이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최소적립금 보증	
	옵션 및 보증가치 (TVOG)는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에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을 차 감하여 계산하였는가?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의 검증결과는 적정한가? 결정론적 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된 값의 검증결과는 적정한가?	
	금리연동형 계약의 미래 현금흐름은 공시이율의 확률론적 금리시나리오에 의해 산출되었고, 시나리오는 "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공시이율 적용단위가 적용되었고, 미래 공시기준이율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7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가?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였는가?  - 금리시나리오는 5-3.나.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5-3.다.의 기준에 따라 산출  - 투자관리비용률은 3-2. 나.(5) ② C.h.②에서 정한 기준  - 조정률은 3-2. 나.(5) ⑥에서 정한 기준, '17.3월까지 판매된 상품의 경우 과거 보험업감독규정 제6-12조제 3항제3호의 설정률 가감한도 준수 여부	
	변액보험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3-2.나. (6) ③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가? (채권수익률 시나리오의 적정성, 주식수익률 시나리오의 적정성, 자체 기준 적용시 입증 결과 등 문서화의 적정성)	
	변액보험 펀드 시나리오에 대한 모수, 난수, 및 결과 적정성 검증 내용이 포함된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보고서가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되었는가? 유효성검증 기준은 5-3 다(4)를 준용하였는가? 이외의 검증 기준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한 기준, 결과의 타당성 및 문서화는 적정한가?	
준비금부채	준비금부채 측정에 적용되는 현금흐름에 다음 항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산출되었는가?  -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 보고되지 않았으나, 기 발생한 보험금  - 장래손해조사비(직접산출이 원칙이나 적용이 어려운 경우 3-2.다.(1)①ㄷ.@에서 정한 간편법 적용가능)  -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 3-3. 위험마진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위험마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3-3의 위험마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계산되었는가? 위험마진 산	
위험마진	정 시 감독규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을 정확히 반영하는지(EX> 99.5%, 85%), 대상위험(생명, 장기손해보험위험액	
게임미엔	중 대재해위험액 제외)의 범위가 정확한지 확인하였는가? 상관관계 반영 및 계약별 배분은 정확하게 적용되었	
	는가?	

# 3-4. 보험계약대출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원칙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하고 자산으로 기표하며, 이는 5장 보험부채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한 것인가?	
현금흐름	관련 현금흐름은 다음으로 구분되어 회사가 설정한 가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보험계약대출잔액(대출이자 미포함)  - 미래신규대출  - 미래대출상환(단, 미래 신규대출액과 미래 대출상환액은 순액 기준으로 구성 가능)  - 대출이자  - 투자관리비용	
	투자관리비용은 3-2 나 (5) ②의 규정을 따르며, 3-2 나 (1)의 단위별로, 3-2 나(4) 산출기간 적용을 준수하였는가?	
	투자관리비용율은 직전 3년 보험계약대출 잔액대비 관련 투자관리비용의 평균으로 산출되었는가?	
	평가에 관한 가정 설정 및 변경 근거를 문서화하였고 일관성 있게 적용하였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예외사항 고려	장래현금흐름상 해약환급금 대비 보험계약대출잔액의 비율이 직전 3개년간 월별 비율의 최대값을 초과하는 경우	
에 되사 8 고 너	에 그 사유 및 합리성 입증결과가 문서화되었고 그 사유가 적정한가?	
산출단위	산출단위는 표2의 보험계약대출 평가 산출단위를 준용하였는가?	
חו שו או או או פון	미래가산이자율은 월별 평균가산이자율이 만기까지 유지되는가? 미래가산이자율은 최근3년 상품별 월별 평균,	
미래가산이자율	감독원장제시 상품군별 가산이자율, 평가시점 현재 상품별 가산이자율 중 가장 작은 값으로 적용되었는가?	
공동재보험	공동재보험 계약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평가가 출재한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 3-5. 재보험자산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원칙	재보험자산은 원수보험 현행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되, 원수보험 현행추정부채와 일관된 산출원칙이 적용되었는 가? 또한, 출재 보험료부채와 출재 준비금부채로 구분하여 각각 적정하게 평가되었는가?	
부도위험반영	출재 관련 현금흐름에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다음에 유의한다)  - 거래상대방별로 출재 보험료부채와 출재 준비금부채를 구분  - 손실조정은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회수금액을 감안  - 회수율은 보험사의 합리적 가정을 사용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설정  - 화폐시간가치를 반영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 시 사용한 할인율 사용  - 구분기준별로 손실조정율이 1% 미만인 경우 간편법 적용의 타당성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구분기준 별로 손실조정률이 1% 미만에 해당하는가? 간편법 재계산 결과가 회사의 계산 결과와 동일한가?)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에 대한 문서화가 적정한가?	
기타(계약의 경계)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가?	

## 제4장 일반손해보험 부채평가

## 4-1. 일반원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적용범위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11호의 기준에 따른 대상인가?	
분류기준	현행부채와 위험마진으로 구분되고 재보험자산은 별도 자산항목으로 표시되는가?	
산출단위	현금흐름 산출단위가 국내/해외로 구분되고 국내는 화재, 종합, 해상, 질병, 상해, 근재, 책임, 기술, 자동차, 보증, 기타로 구분되는가?	

## 4-2. 현행추정부채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원칙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통해 계산한 현행 추정부채에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근거는 타당한가?	
	적용 계리가정은 상기 산출단위 또는 그 이상 세분화되어 적용되었는가?	
보험료부채	현금흐름에 장래 지급보험금, 손해조사비, 유지관리비, 계약의 경계내 예상보험료가 적절히 포함되었는가? - 계약의 경계내 모든 관련 현금흐름 반영 여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3-2 나(3) ~(5) 기준 충족) - 화폐시간가치의 반영 여부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2 나(4)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가?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 항목에 대한 산출기준이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적용되고, 적절하게 문서화되었는가?	
준비금 부채	다음의 항목이 적정하게 현금흐름에 반영되었는가? - 보고되었으나 미지급된 보험금 - 보고되지 않았으나, 기 발생한 사고 보험금 - 장래손해조사비	

과목	점검 항목	결과
	- 사고 해결 과정 관련 담보자산 매각, 구상권,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	
	준비금부채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의 부표1의 기준 또는 그 이상 세분화되어 분석되었는가?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담보별로 구분산출 되었는가?	
	개별추산액은 보험사고별 추산보험금으로 미정산 금액(미수금, 미지급금)을 고려한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미보고발생손해액이 통계적 기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가?	
	개별추산액과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가 직전 5년 이상 총량추산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적정하게 추가부 채로 적립하였는가?	
	총량추산액에 적용된 통계적 방법과 관련하여 기초통계의 추출, 2개 이상의 통계적방법에 의한 분석(보증보험은 단일기법에 의한 분석 가능), 채택된 통계적 기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근거, 채택된 통계적 기법에 의한 추산 과정, 추산결과, 추산기준변경 내역, 보정내용, 경험통계내역, 사후검증결과 적정한가? 또한, 관련된 문서화가 적정한가?	
	총량추산에 적용되는 가정은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 및 문서화는 적정한가?	
	장래손해조사비 계산은 적정한가? (경험통계 적용 원칙, 어려울 경우 간편법)	
	현재가치 평가는 적정한가?	
재보험계약의 보험위 험 전가 평가	재보험계약의 위험전가 유의성 판단 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보험위험의 유의한 전가가 있는 경우에 재보험계약으로 적정하게 분류하였는가?  - 개별 재보험계약을 기준(경제적 연관이 있는 경우 다른 계약과 결합 가능)  - 재보험계약의 체결시점 기준(단, 조건 변동으로 책임 변동 시 그 시점으로 재평가)  - 기대손실이 1% 미만인 재보험계약, 재보험자의 책임을 제한, 통상적 정산주기를 초과하여 연기가 가능한 개보험계약, 사고 발생과 관련 없이 사전에 재보험자 지급액이 정해진 경우 등은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 분류	

## 4-3. 위험마진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워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4-3.가. 규정에 의해 위험마진이 적절히 산출되었는가? 위험마진 산정 시 감독규	<b>남독규</b>
면역	정이 요구하는 신뢰수준은 정확히 반영되었으며, 대상위험의 범위는 정확한가? (EX> 99.5%, 65%)	

## 4-4. 재보험자산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원칙	출재 보험료부채와 출재 준비금부채로 구분하며 현행추정부채와 별도로 산출하되 원수보험의 현행추정부채와 일 관된 산출원칙 및 측정방법을 적용하였는가?	
부도위험반영	출재 관련 현금흐름에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손실조정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다음을 유의한다) - 거래상대방별로 출재 보험료부채와 출재 준비금부채를 구분 - 손실조정은 거래상대방의 장래 부도확률, 부도에 따른 손실, 회수금액을 감안 - 회수율은 보험사의 합리적 가정을 사용하되 그 값은 50% 이하로 설정 - 화폐시간가치를 반영하며 현행추정부채 평가 시 사용한 할인율 사용 구분기준별로 손실조정율이 1% 미만인 경우 간편법 적용의 타당성	
	재보험자산의 손실조정 산출기준에 대한 문서화가 적정한가?	
기타(계약의 경계)	장래에 신규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계약을 보장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험계약을 포함하지 않는가?	

## 제5장 보험부채 할인율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일반원칙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기 위해 수익율곡선에 기반을 두어 금리기간구조를 결정하였는가?	
크인전역	원화와 해외통화 현금흐름을 구분하여 통화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였는가?	
할인율 산출구조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변동성 조정 또는 매칭 조정이 가산된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 구조로 산출되었는가?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통해 산출되었는가?	
원화할인율 (기본 금리기간구조)	다음 사항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관측구간)  감독원장이 정한 최종관찰만기까지의 국고채 수익율을 이용하여 무위험이자율을 산출 국고채 수익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민평평균을 현물이자율로 전환하여 산출 만기별 수익율을 현물이자율로 전환시 Smith Wilson 보간법 사용 관측구간은 최종관찰만기까지로 함  - (수렴구간) 감독원장이 정한 장기선도금리의 최초수렴지점 적용, 이후의 만기구간을 수렴구간으로 결정 장기선도금리는 감독원장이 정한 실질이자율 장기 평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으로 산출 장기선도금리가 직전년도 대비 15bp 이상 변동한 경우 조정(미만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 적용)  - (보간구간) 동 기간의 금리기간구조는 Smith Wilson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	
이쉬쉬이요	다음 사항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원화할인율 (조정 금리기간구조)	- 변동성 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관측구간에 해당하는 기본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만 변동성 조정을 가산한 후 보간구간을 재추정 (감독원장이 제시)	
	- 매칭조정을 가산하는 경우 모든 만기구간에 조정을 가산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원화할인율 (확률론적 시나리오)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을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은 다음 사항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5-3.나 조정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를 기반으로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적용하여 확률론적 시나리오 산출 -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최소 1000개 이상 - 확률론적 시나리오 생성 모형은 Hull-White 1 factor 모형 사용	
변동성 조정	변동성 조정은 다음 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산출되었는가?  - 기준 자산 포트폴리오의 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에 80%를 적용  > 위험스프레드는 보험산업 대표 포트폴리오에 대해 평가시점에 시장에서 관촬되는 자산,신용등급, 만기별 스프레드를 사용하여 계산	

과목	점검 항목	결과
	<ul><li>신용위험스프레드는 부도위험스프레드와 등급하락스프레드의 합으로 산출</li></ul>	
	- 금리위험액 산출시 변동성 조정은 충격 전/후에 동일 한 값을 적용	
	다음의 사항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적용되었는가?	
	- (조건): 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방법): 차이=(부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자산 포트폴리오의 시가를 일치시키는 단일 할인율) - (부채	
	현금흐름을 무위험 금리기간구조로 할인한 경우와 단일 할인율로 할인한 경우 현가를 동일하게 만드는	
	단일 할인율)	
	- (적용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	
	보험부채가 유사한 현금흐름을 가진 자산 포트폴리오 할당되고, 보험기간 동안 유지	
	▶ 매칭 조정이 적용된 부채와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는 다른 활동과 구별되어 운용되며, 다른 자	
매칭 조정	산의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없음	
	▶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대 현금흐름은 부채 포트폴리오의 현금흐름을 복제하며, 미스 매칭	
	이 보험사업에 내재하는 중대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음	
	▶ 부채 포트폴리오의 근원이 되는 보험계약은 미래 보험료 납부를 발생시키지 않음	
	▶ 관련된 인수 리스크는 사망, 장수, 사업비 리스크만 해당됨	
	▶ 사망 리스크가 포함된 부채 포트폴리오의 현행추정부채는 충격발생시 5%이상 증가 않음	
	계약자옵션이 없거나, 해약환급금이 자산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해지 옵션만 행사 가능	
	▶ 할당된 자산 포트폴리오 현금흐름은 고정되며, 발행자 또는 3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인플레	
	이션 영향이 제외된 현금흐름이 고정된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음)	
해외통화의 할인율	기본사항)다음 사항에 의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산출	- (결정론적 시나리오): 해외 통화 결정론적 시나리오는 '5-3가 및 나'의 방법론을 적용함	
	해외통화의 결정론적 시나리오 필요한 가정은 감독원장이 제시	
	▶ 감독원장이 제시하지 않은 해외통화 가정은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가정 적용 가능(단, 이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와 관련한 가정의 산출과정을 문서화함)	
	▶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해외통화 가정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원화 가정을 준용함	
	- (확률론적 시나리오)는 다음을 적용하여 산출	
	<ul><li>금리모형, 모수, 난수 산출사항은 5-3 다(1)~(3) 준용</li></ul>	
	▶ 단, 다음의 경우는 상기 사항 변경 가능	
	■ 확률론적 시나리오 평균이 수익률곡선과 통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등 모수 산출이 제한되는	
	경우, 모수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모수 추정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평가한 시점 현재 시	
	장에서 관찰되는 자산 가격을 기반으로 변경 가능	
	■ 모형 사용이 제한되어 다른 확률론적 금리 모형을 사용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모형의 선정사유, 모형변경 내역, 시나리오 산출과정 등을 문서화한 후 사용 가능	
	▶ 난수는 각 통화별로 산출	
	금리시나리오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성	
	해외통화 변액보험 평가를 위한 할인율은 원화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	

# Ⅲ 지급여력금액 산출

# 1. 개요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순자산가액	가용자본 총괄표상 순자산가치는 건전성재무상태표상 자본 총계와 일치하는가?	
가산항목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부채 금액 중 보완자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정확히 차감되었는가?	
차감항목	차감 대상 항목이 누락없이 반영되었는가? 가용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자본으로 계상된 비지배지분 중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의 비지배지분 상응액을 초과하는 금액 계산 시 종속	
	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는가? 계산에 사용된 요구자본과 비지배지분비율은 정확하게 반	
	영되어 있는가?	

# 2. 계층화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순자산 차감항목	기본자본 산출 시 순자산에서 차감해야 할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보완자본 분류항목	손실흡수성 판단에 따라 보완자본으로 재분류해야 할 항목이 빠짐없이 식별되었는가?	
	기본자본 자본증권의 인정한도를 반영하였는가? (총요구자본의 10%, 총요구자본의 10%를 초과한 자본증권 발행 금액이 보험업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인 경우 총요구자본의 15%)	
	순이연법인세자산 상당액 계산 시 담보제공자산중 피담보채무 및 관련 요구자본 초과액,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 금자산 상당액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차감하였는가?	
	보완자본 계산 시 각 한도를 준수하였는가? (예를 들면 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자산과 순이연법인세자산의 보완 자본 상당액은 총요구자본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보완자본은 총요구자본의 50%를 한도로 하며,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은 한도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해약환급금부족분 상당액 산출시 산출단위(보험회사 전체단위)는 올바르고, 산출대상(공동재보험 수재계약 포함)은 완전하게 식별되며, 법인세효과가 반영되었는가?	

## 3. 자본증권의 계층분류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자본증권의 계층분류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분류 시 손실흡수성 판단은 가용성, 지속성, 후순위성, 기타제한의 부재 관점에서 적정한	

기즈 가?			
기스 기스			
	기스	71-2	

## IV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 제1장 총칙

## 1-1. 측정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신뢰수준	지급여력기준금액은 향후 1년간 99.5% 신뢰수준하에서 발생가능한 요구자본을 나타내는가?	
	각 위험액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산, 재수행, 혹은 독립적 추정 결과 위험액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1-2. 산출구조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총요구자본	총요구자본은 [기본요구자본-법인세조정액+기타요구자본] 산식에 따라 정확하게 산출되었는가?	
기본요구자본	주어진 상관계수를 적용하였는가? (운영위험액은 상관계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본요구자본 법인세 조정액	적용 세율 산출 시 이용하는 직전 3개년도 세전이익은 감사받은 손익계산서 상 세전이익과 일치하는가?	
	법인세 효과 한도 산출에 사용되는 각 요소는 정확하게 산출되었는가? (예를 들어 직전 5개년 세전이익은 감사	
	받은 손익계산서상 세전이익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그룹기준 법인세 효과 산출 시 개별 종속회사 지급여력기준금액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가?	

## 1-3. 측정방식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충격 시나리오 방식	위험별 측정 방식을 준수하였는가?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 대재해위험액, 자산집중위험액	
vs 위험계수 방식	은 위험계수방식으로 산출한다.	

# 1-4. 편입자산분해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간접투자기구 재무상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와 기준가격 재무상태표 중 회사가 선택한 재무상태표는 공정가치 및 위험 측정을 위한 정	
태표	보로서 객관성을 띄고 있는가?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는 외부평가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을 기준가격 재무상태표에서 인식한 금액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했는가?	
편입자산 분해 방식	간접투자기구의 부채가 분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부분 편입자산 분해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간접투자기구가 보유한 모든 자산과 부채가 분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분 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한 경우가 있지 는 않은가?	
	부분 편입자산 분해 방식 적용시 위험액 축소를 위해 편입자산분해 대상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하지는 않았는 가?	
자산 재구성	편입 가능자산 중 간접투자기구의 위험이 최대가 되도록 편입자산을 재구성했는가?	
	자산재구성 포트폴리오 내 채권 자산군을 단일채권으로 재구성할 경우 금리위험액 측정시 가상채권의 내재 스프	
	레드를 금리충격시나리오 적용 전 자산재평가 금액이 간접투자기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일치되도록 산출되었는가?	
	채권 자산군의 신용위험액 산출 시 신용등급, 만기 등 적용은 적정한가? 예를 들면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무등급을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만기 정보가 있음에도 7년을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레버리지	차입 세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부분편입자산분해를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레버리지 속성이 확인되는 경우, 레버리지 속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익스포져 금액을 설정하였는가?	

## 1-5. 위험경감기법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기본 원칙 준수	위험경감기법 운영기준을 적절히 문서화하였는가? 대상항목, 대상 위험, 전략, 경감효과 측정방법, 평가 주기, 대	
	응방법 등을 포함하였는가?	
	이해당사자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험전가를 포함하지는 않았는가?	
	위험경감기법 적용일 현재 보유하지 않은 자산, 부채에 대한 위험경감효과를 반영하지는 않았는가?	
	기준 등급(K-ICS신용등급 기준 4등급) 미만에 신용위험 경감효과를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위험경감효과에 내재된 신용위험도 별도로 식별하고 측정하였는가?	
	위험경감효과를 중복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시장위험 경감	위험 경감 대상 자산과 위험 경감 수단이 동일하지 않지는 않은가? (국내외 금리간, 개별주식간, 개별주식 및 주	
	가지수간은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위험경감 잔존만기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시장위험액 위험경감효과 반영 시 위험경감 잔존만기가 1년 미만	
	인 경우에도 경감효과를 100% 반영하지는 않았는가? 잔존 만기 1년 미만일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하였는	
	가?	
간접투자기구의 위험	간접투자기구의 약관이나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위험경감기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는가? 약관이나 정관에서 정한	
경감효과	경우에 한해 위험경감효과를 인정하였는가?	
	편입자산분해 중 자산재구성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간접투자기구의 환혜지 계약에 대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함에도	
	가상계약을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가상 계약 적용시 가정한 계약의 형태(계약종류), 계약금액(약관에 기재된 목표 헤지비율에 해당하는 펀드 공정	
	가치의 외화 환산금액), 만기, 환율의 적용은 적정한가?	

# 1-6. 비례성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간편법 적용 대상	간편법 적용 항목이 아닌데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편법 적용시 비중 요성 기준	적용 대상 선정 시 적용하는 비중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간편법 적용 방식	간편법 적용 항목에 대한 간편법 적용방식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비례성원칙 충족 여	비례성원칙에 따라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적정한가?	
부 입증	1) 요구자본 산출의 복잡성, 2) 간편법을 적용하더라도 기본법 적용 결과와 중요한 차이가 없다는 것, 3) 위험관리 위원회의 간편법 승인	
	간편법 충족 입증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간편법 적용 시점 전 최소 1개월 이전에 제출하였는가?	
간편법 적용현황 관	ORSA를 통해 매분기 비중요성 기준 충족 여부를 매분기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며,	
리	간편법 적용현황을 공시하였는가?	
	간편법 적용 최대 기간 3년을 초과한 후에도 금융감독원의 승인없이 계속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1-7. 적격 인프라투자 조건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적격 인프라투자사업	인프라투자사업이 인프라 투자대상 조건과 인프라투자 기준을 충족하는가?	
	인프라투자 기준에서 위기상황분석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이를 문서화하였는가?	
	인프라투자 기준에서 수익 예측 가능성 추정을 위한 현금흐름 예측 조건을 1가지 이상 충족하는가?	
	투자자보호장치 세부 조건을 충족하여 관련 규정, 계약서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하였는	
	가?	

#### 1-8. 종속회사 및 관계회사의 요구자본 산출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요구자본 산출방법	종속회사의 경우 보험회사 및 보험업관련 회사에 대해 계정별 합산을 통한 '기본요구자본'을 산출하였는가?	
	관계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업권별 자본규제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종속회사의 경우 최초에 '기본요구자본' 산출방식을 적용하였다가 나중에 '기타요구자본'방식(예: 업권별 자본규	
	제, 요구자본의 대용치)을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산출방법 변경은 불가하다)	
	업권별 요구자본 금액과 환산율은 정확하게 적용되었는가?	

## 제2장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

# 2-1. 일반원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자산] 계리적가정 변동 시 회사에 직·간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자산만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보험계약대출, 재보험자산 등)	
	[자산] 재보험 자산은 '손실조정 반영 전' 금액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부채]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산출방법	7가지 하위 위험 (사망, 장수, 장해·질병, 장기재물·기타, 해지, 사업비, 대재해)에 대한 요구자본을 각각 측정하고 기준서에 제시된 위험 간 상관계수가 정확히 적용되었는가?	
측정방식	대재해 외 6가지 하위 위험에 대해 충격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였는가?	
	보험계약과 관련된 모든 현금흐름을 반영하였는가?	
	할인율, 현금흐름 산출기간, 갱신 관련 가정 (보험료 조정률 한도, 목표손해율 등)을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 동일 하게 적용하였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순자산가치 평가 시 확률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했으나 위험액 산출시에는 결정론적 시나리오를 적용한 부분이 있	
	는가? 있을 경우 충격 시나리오 적용 전후 보험부채의 옵션 및 보증가치가 유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가?	
	평가단위별 Max(충격 전 순자산가치 – 충격 후 순자산가치, 0) 로 계산되었는가?	
	대재해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는가?	
평가단위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액은 보험계약별로 측정하고 있는가?	
	(보험계약이란 동일한 증권번호로 이루어진 보험보장의 집합으로서, 한 개의 주계약과 여러 특약들로 구성될 수 있음)	
	유사한 보험위험 속성(homogeneous insurance risk)을 가진 보험계약 집합을 "마. 상품그룹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요구자본을 측정하고 있는가?	
상품그룹	(기본원칙) 상품그룹 기준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리스크 속성을 고려한 구분기준인가?	
기준	(리스크 속성이란 언더라이팅 정책, 지급금 보상형태, 계약자 리스크 프로파일, 보증구조 등의 보험상품 특성, 경영전략과 연계성 등을 포함함)	
	(기본원칙) 동일 그룹에 속한 계약이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의 본질에 큰 차이가 없는가? 즉, 계리적 가정 변경 시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비슷한 방향으로 발생하는가?	
	(예: 해지시 순자산가치 증가(Lapse supportive) 및 해지시 순자산가치 감소(Lapse sensitive) 여부를 고려하여 그룹 핑)	
	(기본원칙) 그룹핑이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왜곡하지 않는가?	
	(기본원칙) 그룹핑을 통해 산출한 현행추정 결과(옵션 및 최저보증 등)가 개별 계약별로 산출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갖는가?	
	(기본원칙) 충격시나리오 적용 전·후의 상품그룹 기준은 동일한가?	
	(기본원칙) 상품그룹 기준을 문서화하였는가?	
	(기본원칙)(상품그룹 기준 변경 시) 변경 필요성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기본원칙) (상품그룹 기준 변경 시) 변경에 따른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는가?	
	(기본원칙)(상품그룹 기준 변경 시) 내부통제기준에 의거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고 있는가?	
	(최소단위) 상품그룹은 최소한 <표7>의 구분으로 분류되는가?	
	(최소단위) 회사가 적용한 상품그룹단위가 <표7>의 구분보다 세분화되었다면, 해당 단위로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보다 부합하는가?	
	(최소단위) 이익/손실 그룹은 '보험상품명/개정시점/저해지환급형여부'로 분류된 구분단위별로 매 평가시마다 "2-6.나.(1)"의 옵션행사율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하여 구분하는가?	
	(최소단위)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익그룹으로 분류하는가?	
	(최소단위) 옵션행사율 감소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이 옵션행사율 증가 충격시나리오를 적용할 때의 순자산가치 감소분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실그룹으로 분류하는가?	
	(최소단위) 저해지환급형 상품이란 동일한 보장내용을 담고 있는 非저해지환급형 상품 대비 일정기간내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상품을 의미하는가?	

## 2-2. 사망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사망률 증가로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충격수준	현행추정사망률에 12.5% 증가한 가정을 적용하여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산출하였는가?	
위험마진	위험마진에 대해서 충격 전후에 값이 변동하지 않았는가?	
산출방법	충격 전 후에 쓰인 보험부채 현금흐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증가된 사망률 가정 외에 다른 가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 2-3. 장수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사망률 감소로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충격수준	현행추정사망률에 17.5% 감소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여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산출하였는가?	
위험마진	위험마진에 대해서 충격 전후에 값이 변동하지 않았는가?	
산출방법	충격 전 후에 쓰인 보험부채 현금흐름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감소된 사망률 가정 외에 다른 가정들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가?	

## 2-4. 장해·질병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장해·질병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충격수준	정액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정액보상위험액)과 실손보상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하 실손보상위험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는가?	
	정액보상위험액 산출 시 위험률에 반영된 충격 수준(정액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3.0% 증가)이 정확한가? 정액보 상위험액을 독립적으로 산출해본 결과 동일한 위험액이 산출되는가?	
	실손보상위험액 산출 시 위험률에 반영된 충격 수준(실손보상 담보의 위험률이 10.0% 증가)이 정확한가? 실손보 상위험액을 독립적으로 산출해본 결과 동일한 위험액이 산출되는가?	

## 2-5. 장기재물·기타위험액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가이던스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장기손해보험 중 재물, 비용, 배상 및 기타 담보의 위험률 증가로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충격수준	장기재물·기타위험액 산출 시 위험률에 반영된 충격 수준(장기재물 및 기타담보 위험률 16.0% 증가)이 정확한가?	

## 2-6. 해지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보험계약자의 옵션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충격수준	옵션행사율 변화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옵션행사위험액)과 대량해지로 인한 요구자본(이하 대량해지위험액)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였는가?	
산출방법	옵션행사위험액은 계약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증가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액 합계와 계약 자의 모든 옵션행사율이 동시에 35.0% 감소하는 경우의 순자산가치 감소금액 합계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하 였는가?	
	(생명보험회사)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률, 연금일시금전환율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포함하였는가?	
	(손해보험회사) 계약자옵션 가정에 해약률 및 중도인출율 가정을 포함하였는가?	
	대량해지위험액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유동성 확보 등의 목적으로 보유계약의 30.0%를 일시에	
	해지한다는 가정 하에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하였는가?	
	대량해지위험액은 상품그룹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 전체 수준으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는가?	

## 2-7. 사업비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사업비 가정이 포함된 모든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는가?	
	사업비수준위험과 인플레이션위험을 모두 고려하였는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비용은 수당과 재산관리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항목을 포함하였는가?	
	현재 평가시점에 인플레이션 가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비 항목이더라도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위험을 측정하였는가?	
충격수준	전 보험기간 사업비가 10% 증가하고 인플레이션이 1.0%p 상승하는 가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의 감소금액으로 산출하였는가? 순자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사업비위험액을 0으로 산출하였는가?	

## 2-8. 대재해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전염병, 대형사고 관련 담보가 존재하는 보험계약이 누락없이 식별되었는가?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의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전염병위험액과 대형사고위험액의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합산)?	
	전염병 사망 관련 담보를 완전하게 식별하고, 관련 가입금액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하였는가?	
	대형사고사망/장해/장기재물위험과 관련한 담보를 완전하게 식별하고, 관련 가입금액과 특정기간 동안의 지급보	
	험금 정보를 정확하게 산출하였는가?	
	대형사고장해위험액 산출시 실손의료비 등 빈도와 심도가 모두 반영된 담보의 가입금액과 최대보장한도가 상이	
	한 경우 약관상 보장하는 최대 보상한도를 익스포저로 설정하였는가?	
	대형사고위험액의 하위위험 간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 (상관계수를 1로 적용하고 위험액을 단순 합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산)	
	대형사고사망/장해/장기재물위험과 관련한 노출비율 및 피해시나리오가 정확히 적용되었는가?	

### 2-8-1. 대재해위험액 - 전염병위험액 세부내역(기타산출자료)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전염병 사망 관련 담보가 존재하는 계약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각 담보별로 원수, 출재 가입금액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감독원이 제공하는 위험계수를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 2-8-2. 대재해위험액 - 대형사고위험액 세부내역(기타산출자료)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대형사고사망) 대형사고 사망 관련 담보가 존재하는 계약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대형사고사망) 각 담보별로 원수, 출재 가입금액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대형사고사망) 감독원이 제공하는 피해시나리오 및 노출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대형사고장해) 대형사고 장해 관련 담보가 존재하는 계약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대형사고장해) 빈도, 심도가 반영된 담보의 가입금액 합계액은 약관상 보장하는 최대보상한도로 하였는가?	
	(대형사고장해) 각 담보별로 원수, 출재 가입금액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대형사고장해) 감독원이 제공하는 피해시나리오 및 노출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대형사고장기재물) 대형사고장기재물 관련 담보가 존재하는 계약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가이던스

과목	점검 항목	결과
	(대형사고장기재물) 각 담보별로 원수, 출재 가입금액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식별하였는가?	
	(대형사고장기재물) 감독원이 제공하는 피해시나리오 및 노출비율을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 제3장 일반손해보험위험액

## 3-1. 일반원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일반손해보험위험액 산출을 위해 해외를 포함한 계약전체 내역이 측정대상으로 정의되어 있는가?	
산출방법	상관계수를 고려한 위험별 합계액이 일반손해보험위험액으로 산출되었는가?	
측정방식	하위위험별 위험계수를 적정하게 적용하여 일반손해보험 위험액을 측정하였는가?	

## 3-2.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산출방법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 산출 시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단위별 상관계수를 적용하고 하위위험, 보장단위, 보장 그룹, 지역의 순서로 합산하여 산출하였는가?	
하위위험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을 보험가격에 대한 요구자본과 준비금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는가?	
보장단위 및 보장그 룹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 구분기준에 따라 보장단위 및 보장그룹이 구분되었는가?	
지역	보험가격·준비금위험액의 국가별 지역 구분기준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었는가?	
보험가격위험액	보증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을 위해 보장단위별 보유보험료가 정확히 계산되고, 합산비율을 고려한 조정위험계수가 보유보험료에 적용되었는가?	
	보증보험의 보험가격위험액 산출을 위해 보유위험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이 정확히 계산되고, 보증보험의 보장단위별 위험보험료위험계수와 보험가입금액위험계수가 각각의 보유보험료와 보험가입금액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준비금위험액	보유지급준비금은 각 지역 단위 및 보장단위별로 산출되고 이에 보장단위별 준비금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준비금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위험액을 산출하였는가?	
ㅂㅇ믜ㅅㄱㅇ 사ᄎ바	손해율에 연동되는 비례재보험을 보유리스크율 산출대상으로 정의하였는가?	
보유리스크율 산출방 법	손해율분포법에 따른 보유리스크율과 위험계수적용법에 따른 보유리스크율이 정확히 산출되고, 둘 중 더 큰 값	
Н	이 보유리스크율로 정의되었는가?	

## 3-3. 대재해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방법	대재해위험액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대형사고위험에 대한 요구자본 및 대형보증위험에 대한 요구자본본으로 구분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산출대상	자연재해, 대형사고 및 대형보증에 대한 위험액을 산출대상 보장단위에 따라 하위위험으로 구분하고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 계약상 면책조항 등을 고려하였는가?	
다 어 내 셈 이 침 애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위험액을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고 상관계수 '0'을 적용한 지역별 지진위험액과 풍수해 위험액의 합산액을 자연재해위험액으로 산출하였는가?	
자연재해위험액	해상에 속한 보험계약 중 지역구분이 어려운 보험계약은 지진 및 풍수해 위험 각각에 대해 해외 위험계수를 적용하였는가?	
대형사고위험액	대형사고위험액은 대형사고재물위험액과 대형사고상해위험액으로 각각 구분되고 이를 합산하여(상관계수를 1로 적용) 산출되었는가?	
	보유보험가입금액 산출 시 정해진 재물 및 상해 위험계수를 각각 적용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보장금액을 수령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였는가?	
대형보증위험액	산식에 따라 산출된 보유보험가입금액에 대형보증위험액의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회수가능 재보험금 등이 정확하 게 계산되어 반영되었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보유리스크율 산출방	보유리스크율을 보증보험과 그 외 일반손해보험으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고려된 보	
법	유 리스크의 비율에 따라 보장단위별로 산출하였는가?	

## 제4장 시장위험액

# 4-1. 일반원칙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시장변수의 변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측정대상으로 하였는가?	
산출방법	하위위험간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	
측정방식	자산집중위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였는가?	
	충격시나리오 적용 후 순자산가치 산출시에는 충격시나리오 적용한 시장변수 외에 다른 시장변수는 충격시나리	
	오 적용 전 순자산가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하였는가?	

## 4-2. 금리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자산 및 부채 명세 상 금리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금리위험액의 측정 대상으로 완전하게 포함되었는가?	
	금리위험 측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자산과 부채(계약만기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예치	
	금(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 등 지급여력금액에 가산하는 부	
	채항목 등)가 모두 제외되었는가?	
측정방법	감독원에서 제시한 5가지 충격 시나리오를 무위험 금리기간구조에 정확하게 적용하였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부채는 금리충격 시나리오별 부채 변동금액을 듀레이션법으로 산출하였는가? 금리 적용주기마다 적용이율이 변동되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듀레이션을 정확하게 산출하였는가?	
	자산재평가시 사용하는 현금흐름에 감독원에서 제시한 5가지 충격 시나리오를 현금흐름 산출에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	
	자산 할인율에 적용하는 스프레드가 적정한가?	
	부채 할인율에 적용하는 스프레드가 적정한가?	
	금리위험액 산정 시 사용된 금리상승위험액, 금리하락위험액, 금리평탄위험액, 금리경사위험액, 평균회귀금액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4-3. 주식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자산 및 부채 명세 상 주식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주식위험액의 측정 대상으로 완전하게 포함되었는가?	
주식유형	주식위험액 측정대상을 선진시장상장주식 및 신흥시장상장주식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는가?	
	구분기준에 따른 각각의 주식유형별 세부 측정방안을 적용하였는가?	
산출방법	주식위험으로 인한 순자산가치 감소분 계산 시 주가하락시나리오 및 주가변동성 상승 충격시나리오를 완전하게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4-4. 부동산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측정대상	자산 및 부채 명세 상 부동산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부동산 위험액의 측정 대상으로 완전하게 포함되었는가?	
익스포저	공정가치 혹은 공정가치로 조정된 값이 부동산위험액의 익스포저 산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추겨스주	보유중인 부동산을 의무보유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부동산에 대한 충격시나리오를 적용	
중 <b>ጎ</b> ㅜ正 	하여 순자산가치 감소액을 위험액으로 적정하게 산출하였는가?	

### 4-5. 외환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자산 및 부채 명세 상 외환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외환 위험액의 측정 대상으로 완전하게 포함되었는가?	
	익스포저 계산 시 외화 관련 자산 및 부채 포지션의 기준통화를 환산한 금액으로 정의하였는가?	
측정대상	해외종속회사의 부채를 위험측정 시점 부채금액의 110%로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	
	제외되어야 할 자산 및 부채(특별계정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보험부채 및 이와 연계된 운용자산)가 외	
	환 위험액 측정 시 제외되었는가?	
	외환위험액 산출 시 환율하락위험액과 환율상승위험액 중 큰 금액에 가격변동위험액을 합산하여 정확히 산출하	
산출방법	였는가?	
[건글이티	환율 상승/하락 충격시나리오 적용에 따른 순자산감소액과 관련 상관계수가 통화별 익스포저에 적용되어 외환위	
	험액이 산출되었는가?	

## 4-6. 자산집중위험액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자산 및 부채 명세 상 자산집중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자산집중위험액의 측정 대상으로 완전하게 포함되었는가?	
측정대상	자산집중위험액 산출대상에 난외 익스포저를 포함하고 있는가? 또한, 제외되어야 할 항목(중앙정부가 보증하는	
	익스포저, 부채금액과 직접 연계된 자산 익스포저 등)이 자산집중위험액 측정 시 제외되었는가?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가이던스

과목	점검 항목	결과
하위위험	자산집중위험액은 거래상대방 집중위험과 부동산집중위험액으로 구분하여 산출되었는가?	
거래상대방의 정의	동일그룹 여부의 판단을 위해 독점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금융지주회사, 동일 대주주 등을 고려하였는가?	
거래상대방 집중위험	공정가치에 따른 익스포저가 산출되고 편입자산 분해적용 시 분해된 자산을 기준으로 익스포저가 산출되었는가?	
익스포저		
시오드그 저오기즈	신용위험에 대한 위험경감기법(예. 담보, 보증, 상계 등) 적용사항을 고려하고, K-ICS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적용기준	집중위험을 산출하였는가?	
부동산 집중위험 익	부동산집중위험액 산출 시 고려한 익스포저는 직/간접적(담보 취득 포함)으로 보유한 모든 부동산을 포함하고 있	
스포저	고 개별부동산 집중 익스포저와 전체부동산 집중 익스포저로 구분하였는가?	
어겨기즈	연결전후 거래상대방 익스포저 및 자산집중위험을 규정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산출값의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	
연결기준 	방의 자산집중위험을 측정하였는가?	
O 기지보 사츠	거래상대방집중위험액과 부동산집중위험액을 구분하고 상관계수를 '0'으로 하여 자산집중위험액을 정확히 산출하	
요구자본 산출	였는가?	

## 제5장 신용위험액

## 5-1. 익스포저 산출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ᄎ정대사	자산 및 부채 명세 상 신용위험에 노출된 대상이 신용위험액 측정 대상으로 완전히 포함되고 제외사항이 고려되	
측정대상 	었는가?	
B/S(난내)자산 분류	난내자산을 신용자산과 담보부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자산을 세부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익스포저를 산출	
	하였는가? 재보험계약관련 익스포저를 누락없이 반영하였는가?	
나이지사 브리	난외자산을 장외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 및 난외신용공여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신용환산율을 고려하	
난외자산 분류 	여 정확한 익스포저 산출기준을 적용하였는가?	

## 5-2. 신용위험액 산출기준

과목	점검 항목					
신용위험액 산출	신용위험액은 "위험계수 산출기준"에 따른 위험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는가?					
K-ICS 신용등급 적용	국내외 신평사 신용등급 및 등급부도율을 이용해서 K-ICS 신용등급으로 정확히 매핑하였는가?					
기준						
유효만기 산출기준	유효만기는 잔존만기 또는 가중평균 현금흐름방식으로 정확히 산출되었는가?					
	위험계수 산출 대상항목을 신용자산,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난외자산, 담보부자산(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 제외)으					
위험계수 산출기준	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 세부 산출방안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요구자본 산출에 적용된 신용위험 경감액은 신용위험 경감기법에서 정의한 상세방안에 따라 산출하였는가?					

## 5-3.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

과목	점검 항목							
신용위험액 위험경감	동일한 거래상대방과의 자산 및 부채간 상계를 포함한 모든 신용위험액 위험경감기법을 포함하고 위험경감효과							
포함대상	차감 등의 제한사항을 반영하였는가?							
적격금융자산담보 위	적격금융자산담보로 보고된 항목이 규정에 따라 분류되고 담보종류별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위험경감효과를							
험경감	산출하였는가?							
저겨 비즈 미 시유교	보증 또는 신용파생상품을 위험경감기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위험경감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공통요							
적격 보증 및 신용파 생상품 위험경감	건 및 개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위험경감액 산출 시 K-ICS 등급과 만기 불일치에 따른 조정위험경감액 등을							
	고려하였는가?							

## 제6장 운영위험액

## 6-1. 익스포저 산출기준

과목	점검 항목				
측정대상	운영위험액 산출 시 변액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보험료 익스포저와	운영위험액을 보험료 익스포저와 현행추정부채 익스포저로 구분하여 산출하고 납입보험료 및 초과납입보험료,				
현행 추정부채 익스	결산시점 현행추정부채를 정확하게 산정하였는가?				
포저					

### 6-2. 운영위험액 산출기준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운영위험액 산출	운영위험액 산출 시 규정에 따른 적용위험계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가?	
상품군별 구분	상품군별 위험액을 합산하여 일반운영위험액을 산출하였는가?	
운영위험액 산출기준	보험료위험액과 현행추정부채 위험액 중 큰 금액을 일반운영위험액으로 산출하였는가?	

## V 문서화 요건

과목	점검 항목						
1단계: 내부 통제	[지배구조법 감독규정 별표3]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력 산출, 검증, 관리와 관련한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이를 [금						
	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에 포함하였는가?						
2단계: 회사 판단에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관리 기준(의사결정 체계, 권한과 책임, 세부 절차)을 상세하게 문서						
대한 관리기준	화하고 이에 대해 위험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득하였는가?						
3단계: 판단 사유와	회사의 자율적 판단을 허용하는 사항에 대한 적용 기준, 판단 근거, 의사결정 과정, 통제 절차 등을 상세히 문서						
근거 문서화	화하고 이를 위험관리책임자로부터 확인받았는가? 2단계에서 정한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심의 및 의결을 받았는						
	가?						
4단계: 증빙보관과	기타 지급여력 산출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관리							

# VI 경과조치

# 1. 경과조치 모델

과목	점검 항목	결과
공통적용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무에 대한 자본계층화시 적용한 한도는 적절한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자본감소분 산출대상에 2023년 3월 31일 이후 신규로 취득한 운용자산 또는 신규 보험계약이 포함되지는 않았	
	는가?(산출대상은 2023년 3월 31일 현재 운용자산 및 보유계약으로 한정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도입 전 부채와 도입 후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이 빠짐없이 정확하게 반영되었	
	는가?	
	자본감소분에 법인세 조정효과가 반영되었는가?	
	연도별 적용비율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가?	
적용 요건	경과조치 대상인 금리위험과 신용위험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도입 전 위험액보다 도입 후 위	
	험액의 60%를 초과했음에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에 대해 국내 종속 보험회사가 신청한 경과조치를 적	
	용하는 경우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에서 정한 기준(경과조치 적용기간 단축 등)을 종속회사와 동일하게 적용	
	하였는가?	

## 2. 경과조치 적용 및 종료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사전 신고	경과조치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경과조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경과조치 신고 기한 준수 및 대표이	
	사의 검증보고서가 필요)	
적용 예외 규정	2022년 6월 30일 현재 금리위험액과 주식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조건을 충족했지만 2023년 3월 31일 현	

###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 가이던스

과목	점검 항목						
	재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과조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경과조치 시행 후 중	2023년 2월 28일 이후에 예외적으로 중도신고를 통해서 경과조치를 적용 받았을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						
도 신고	(예를 들면 인수나 합병으로 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 가능)						
사후 관리	사후 관리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적정하게 작성하여 해당 기간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는가? (예를 들면 생명/						
	장기손해보험부채, 장수/사업비/해지/대재해위험액, 주식/금리 위험액에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대표이사는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제출해야 함)						
경과 조치 기간의 단	배당성향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잔여 경과기간을 축소하지 않고 적용하지는 않았는가?						
축							
조기중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과조치 적용 중단을 통보받았음에도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3. 적기시정조치 유예

과목	점검 항목	결과
적용 유예	적기시정조치 적용 대상이라면 그 적용 유예 요건을 충족하는가?	

## 제3장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

아래 경영진 서면진술서 사례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면진술서를 예시한 것이며, 감사인은 개별 감사업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례를 수정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사용한다.

[회사의 레터헤드지에 작성한다.]

[날짜]

\*\*회계법인 귀중

서울특별시 \*\*\*구 \*\*\*\*로 111 \*\*빌딩

이 경영진진술서는 [재무상태표 날짜] 기준 [회사명]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날짜]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영진진술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영진진술서를 수령하는 것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 유의적인 절차임을 인정합니다.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귀사의 감사목적은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함이며 귀사의 감사가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기준은 회계 시스템, 내부통제 그리고 관련 데이터에 대한 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존재할 수 있는 모든 부정이나 오류 혹은 기타 비정상적인 사항들에 대한 파악 을 위해 설계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합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질문을 수행하는 등, 최선의 지식과 판단에 따라)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A.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와 재무정보

1. 우리는 [날짜]일자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에 관한 감사계약서 의 조건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 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하였

습니다.1

- 2. 우리는 [회사/그룹]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sup>2</sup>에 따라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작성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누락을 포함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승인하였습니다.
- 3. 우리는 [회사/그룹]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금융감독원에서 발행한 지침이나 질의회신 내용을 보충할 책임을 인정합니다.
- 4. [회사/그룹] 경영진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회사/그룹]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 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게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sup>3</sup>
- 5. **[당기 미수정 감사차이가 있거나 전기 차이 수정의 당기 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우리는 귀사가 첨부와 같이 요약 제시한 당기 감사동안 집계되었고 표시된 최종기간에 관련된 미수정 감사차이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sup>4</sup> 우리는 [왜곡표시 미수정에 대한 이유]에 따라 감사인이 식별하고 관심을 요한 이러한 차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sup>5</sup>

[당기 및 전기 미수정 감사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당기 미수정 감사차이가 없으며 전기 감사 차이 수정의 당기효과가 당기에 유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 당기 감사 중 식별되 었고 표시된 최종기간에 관련된 미수정 감사차이가 없습니다.

[경영진이 발견된 항목 중 특정 항목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차이가 아니라고 믿는 경우 다음 진술을 포함할 수 있음.] 우리는 [해당 특정 항목에 대한 기술]항목이 차이라는 점에 동의하 지 않습니다. [이유에 대한 설명 기술]

#### B. 부정을 포함한 법률 및 규정 위반

1. 우리는 [회사/그룹]의 사업활동이 법률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부정을 포함한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을 식별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sup>1</sup> 감사기준서 580.10

<sup>&</sup>lt;sup>2</sup> 감사기준서 580.10; 감사기준서 210.6(b)(i)

<sup>&</sup>lt;sup>3</sup> 감사기준서 210.6(b)(ii)

<sup>4</sup> 감사기준서 450.14

<sup>&</sup>lt;sup>5</sup> 감사기준서 450.A29

- 2. 우리는 부정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내부통제를 설계, 구축 및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합니다.6
- 3. 우리는 부정으로 인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위험에 대한 우리의 평가결과를 귀사에게 공개하였습니다.7
- 4. [경영진이 법률 혹은 규정 위반이 발생했음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법률과 규정 위반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경우.] 우리는 [회사/그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우리에게 알려진 (부정을 포함한) 법률과 규정 위반에 관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모든 사례와 관련된 정보 및 내부 조사에 대해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천이나 형태에 제한없이) 귀사에게 공개하였고 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귀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관한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금융 비리
  - [회사/그룹]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정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가 [회사/그룹]의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면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중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이 되는 기타 법률과 규정
  -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부정이 지급여력 및 건 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 루된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 또는 다른 법규 위반사항
  -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당국 또는 기타의 사람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된 부정혐의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진술 또는 다른 법규 위반사항<sup>8</sup>

[경영진이 법률 혹은 규정 위반이 발생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법률과 규정 위반에 대한 진술을 받은 것이 없을 경우] 우리는 [회사/그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는 부정을 포함하여 법률과 규정 위반에 관해 식별되거나 의심되는 사례(내부고발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천이나 형태에 제한없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에 관한 위반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금융 비리

<sup>7</sup> 감사기준서 240.40(b)

<sup>&</sup>lt;sup>6</sup> 감사기준서 240.40(a)

<sup>&</sup>lt;sup>8</sup> 감사기준서 240.40(c),(d); 감사기준서 250.A16

- [회사/그룹]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상의 중요한 금액과 공시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정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금액과 공시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해당 법규의 준수가 [회사/그룹]의 사업의 일상적인 운영 면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중요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근본이 되는 기타 법률과 규정
- 경영진, 내부통제에 유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종업원 또는 부정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의 기타 관련자가 연루된 부정 또는 의심되는 부정 또는 다른 법규 위반사항
  - 종업원, 과거의 종업원, 분석가, 규제당국 또는 기타의 사람들로부터 커뮤니케이션된 부정혐의 또는 의심되는 부정에 대한 진술 또는 다른 법규 위반사항<sup>9</sup>

#### C. 제공된 정보와 정보 및 거래의 완전성

- 1. 우리는 귀사에게 다음을 제공하였습니다.
  - 기록, 문서 그리고 기타의 사항과 같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작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
  - 귀사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 및 보고 목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한 추가적인 정보
  - 감사증거를 얻기 위해 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당사 내의 인력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sup>10</sup>
- 2. 모든 중요한 거래, 사건 및 상황은 회계기록에 기록되었으며 [모든 중요한 거래, 사건 및 상황]은 [COVID-19와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었습니다.<sup>11</sup>
- 3. 우리는 *[기간]*동안 개최된 모든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최근 회의 경우 요약본)을 귀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의사록 일자는 *[날짜]*입니다.
- 4. 우리는 회계 추정치 및 관련 공시를 수립하는데 사용한 방법, 유의적인 가정, 데이터가 적절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인식, 측정, 공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관되게 적용되는

<sup>&</sup>lt;sup>9</sup> 감사기준서 240.40(c),(d); 감사기준서 250.A16

<sup>10</sup> 감사기준서 580.11(a); 감사기준서 210.6(b)(iii)

<sup>11</sup> 감사기준서 580.11(b)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sup>12</sup>

- 5. 위반 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입금에 대한 약정과 조건 또는 요구사항과 같은 계약적 합의의 모든 내용을 귀사에 공개하였으며 [개별/그룹/단일기업]은 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6. [지난 경영진진술서일자]부터 본 경영진진술서일자까지, 이미 발생하였거나 우리의 조사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아는 한 발생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우리의 정보기술체계에 대한 승인받지 않은 접근을 귀사에게 모두 공개하였으며, 이는 제 3자(규제 기관, 법 집행 기관 및 보안 컨설턴트 포함)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에 의해 주의를 요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승인받지 않은 접근은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개되었습니다.

#### D. 부채와 우발사항

- 1. 보증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모든 부채와 우발사항은 서면 혹은 구두로 귀사에게 공개하였으며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 2. 법률자문과 상관없이 모든 진행중인 혹은 가능성 있는 소송사건과 손해배상에 대한 정보를 귀사에게 제공하였습니다.<sup>13</sup>
- 3. 소송이나 손해배상과 관련된 모든 부채는 적절히 계상하였으며 제3자에게 제공한 모든 보증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습니다.<sup>14</sup>

### E. 계속기업가정 15

1. 당사의 계속기업가정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항들을 제공하였으며 여기에는 유의적인 조건과 사건, 미래 행동 계획, 이러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F. 후속사건

1. [COVID-19와 관련된 사건을 포함하여] 감사인에게 제공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개별/그룹/단일기업]의 사업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사건은 없습니다.<sup>16</sup>

#### G. 자산부채평가

<sup>12</sup> 감사기준서 540.37(개정)

<sup>13</sup> 감사기준서 501.12

<sup>14</sup> 감사기준서 501.12

<sup>15</sup> 감사기준서 570.12

<sup>16</sup> 감사기준서 560.9

- 1. 평가원칙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적용되었습니다.
- 2. 가용자본 항목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분류되었으며 해당 기준에 제시된 계층(tier)별 한도가 적격가용자본 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가용자본 항목 중 제외된 것은 없습니다.
- 3.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간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기초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재무상태표일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조정 및 연간재무제표 목적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정 제외].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목적상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조정은 연간재무제표에 보고된 기초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H. 책임준비금

- 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를 위한 책임준비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 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 2.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포함된 계리적 금액 및 잔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의견에 따르면 그러한 모든 금액은 적정하게 표시되었습니다.

#### I. 지급여력기준금액

#### 1. 「*다음 중 하나 사용:*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표준모형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수준에 한하여 우리는 표준모형을 수정 없이 적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혹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반영된 지급여력기준금액이 내부모형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수준에 한하여 우리는 승인된 내부모형을 수정 없이 적용하여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J. 승인, 수정, 및 감독목적 결정

- 1. 우리는 [내부모형의 부분적 혹은 완전한 사용을 통한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정을 제외한 특수한 방법론]의 사용을 위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승인이 해당 승인내역에 의거 올바르고 일관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 2.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승인 및 면제 내

역의 사본을 제공하였으며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요건에 대한 재량적 적용 및 요건 명확화에 대하여 [개별/그룹/단일기업]과 금융감독원[그리고 기타 현지 감독기관]간 교신 내역의 사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모든 질의와 명확화 요청이 명확하게 해결되었으며 합의된 해결방안에 따라 행동하였다고 믿습니다.

#### K. 법인세 및 간접세

- 1. 우리는 [개별/그룹/단일기업]의 세무회계 방법에 책임을 지고 있으며 동 방법은 당기 중 보험 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요건을 위하여 일관되게 적용되었습니다.
- 2. 우리는 미래 과세소득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우리의 계획의 결과에 대한 추정을 나타내며,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 분석에 사용된 입수 가능한 증거와 유의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무상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이 소멸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실행할 것입니다.
- 3. 우리는 잠재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회계처리의 근거로서 모든 세무관련 의견, 과세당 국과의 교신내역, 기타 적절한 정보를 귀사에게 공개하였습니다.
- 4. [당사의 세무정책이 공격적이고 유의적일 때] 우리는 귀사에게 미지급법인세 계상(우발부채 계상 혹은 이러한 부채의 부재, 이자의 결정 및 처벌 적용 가능성 포함)의 근거가 되는 잠재 적으로 중요한 항목에 대한 모든 의견을 제공하였으며 우리가 선택한 세무 정책에 대하여 반대되거나 확신의 수준이 낮은 의견들도 제시하였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상황에서 요구되			·된다. 0	이러한 <sup>:</sup>	진술의	예는	다음	section의	"특정
(최고경영자/CEC	))								
(최고재무관리자	/CFO)								

\_

<sup>17</sup> 감사기준서 580.13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

### 특정 상황에서 요구되는 예시

#### 회계추정치

[높은 위험의 추정을 식별한 경우, 회계추정치에 대한 경영진진술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예시/명칭] 회계추정치18

- 1. 우리는 [회계추정치 명칭] 추정 과정에서 수립된 유의적인 판단이 우리가 아는 모든 관련 정보[그리고 XXX에 대한 COVID-19 효과]를 고려했음을 확인합니다.
- 2. 우리는 우리가 사용한 방법, 가정, 데이터의 선택 혹은 적용이 [회계추정치 명칭] 추정을 위해 일관되고 적절한 방식으로 적용 및 사용되었다고 믿습니다.
- 3. 우리는 [회계추정치 명칭] 추정에 사용된 유의적인 가정이 [회사/그룹]을 대신하여 [특수한 행동 방침]을 수행하기 위한 우리의 의도 및 능력을 적절하게 반영함을 확인합니다.
- 4. 우리는 회계추정치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완전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 5. 우리는 [회계추정치 명칭] 추정에 적절한 특수 기술 및 전문성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6. 우리는 [COVID-19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회계추 정치의 수정이 요구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7. [식별된 회계 추정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공시 또는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추정치 명칭] 추정에 대해 공시 또는 인식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추정치를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sup>&</sup>lt;sup>18</sup> 감사기준서 540.A145(개정)

## 제4장 감사보고서 사례

아래 감사보고서 사례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 사례를 예시한 것이며, 감사인은 개별 감사업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례를 수정하여 사용한다.

###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첨부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XXX회계법인이「보험업감독규정」제6-8조의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고 제출하는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입니다.

- 「보험업감독규정」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 「보험업감독규정」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 「보험업감독규정」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본 검증보고서상 검증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 '특정목적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감사 – 특별 고려사항'에 따라 수행한 감사에 해당합니다.

### 사례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20XX년 X월 XX일

#### 감사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20XX 년 12 월 31 일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 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감사의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작성기준이 기술되어 있는 부분 참조\*]에 기술되어 있는 회사의 작성기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산출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다른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금융감독원만을 위한 것이며 그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

<sup>\*</sup> 예를들어, 지급여력 및 건전성재무상태표 표지에 '첨부된 지급여력 및 건전성재무상태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당사가 작성하였습니다'라고 회사가 기술하고, 해당 부분을 참조하는 경우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이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또는 그 외에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한,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정책의 적합 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 경영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들을 준수하고 우리의 독립성 문제와 관련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모든 관계와 기타사항들, 해당되는 경우, 관련 제도적 안전장치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진술을 지배기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사례2.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2.1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사명]

주주 및 이사회 귀중

20XX년 X월 XX일

####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20XX년 12월 31일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XX 년 12 월 31 일 현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한정의견근거

한정의견 근거 기입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사례 1 참고]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 참고]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XX(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2.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 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20XX년 X월 XX일

#### 한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20XX 년 12 월 31 일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XX 년 1 월 1 일 현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한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한정의견근거

#### 한정의견 근거 기입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한정의견을 위한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사례 1 참고]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 참고]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XX(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사례3.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20XX년 X월 XX일

#### 부적정의견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20XX 년 12 월 31 일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20XX 년 1 월 1 일 현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이 감사보고서의 부적정의견근거 단락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중요성의 관점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22 '지급여력금액 및 지급여력기준금액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부적정의견근거

부적정의견 근거 기입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부적정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사례 1 참고]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 참고]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사례 1 참고]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XX(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 사례4.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 의견거절

우리는 AB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는 20XX 년 12 월 31 일 현재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별첨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 의견거절 근거

의견거절 근거 기입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 및 이용 제한

[사례 1 참고]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사례 1 참고]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 및 감사기준서 800에 따라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 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감사보고서의 의견거절 근거 단락에서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 때문에 해당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무정보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감사인의 명칭] [감사인의 주소] [감사보고서일]

> 서울특별시 XX구 XX로 XXX X X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XXX(인)

20X2년 X월 X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